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이정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546
----------	-------

발의연월일 : 2026. 9. 22.

발 의 자 : 이정현 · 조인철 · 박선원
허성무 · 김우영 · 한민수
송기현 · 한준호 · 손명수
김의겸 · 노종면 의원
(11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정보보호인증이 임의사항으로 규정되어 있어,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기기까지 아무런 보안 검증 없이 제조·수입되고 있으며, 미인증 기기의 시장 유통을 차단할 수단도 마련되어 있지 아니한 실정임.

이에 고위험기기등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에게 정보보호인증을 받도록 의무화하고,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의 판매등을 제한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게 과태료를 부과함으로써 정보통신

망의 안정성 및 국민의 생명·신체·재산의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
(안 제48조의6제3항·제4항 신설 등).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8조의6제1항 중 “제4항”을 “제6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3항부터 제7항까지를 각각 제5항부터 제9항까지로 하며, 같은 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같은 조 제7항(중전의 제5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및 제2호 중 “제4항”을 각각 “제6항”으로 한다.

③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고위험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한다.

④ 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4조의4제5호의2 중 “제48조의6제3항”을 “제48조의6제5항”으로 하고, 같은 조 제5호의3 중 “제48조의6제5항”을 “제48조의6제7항”으로 한다.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제2항에 제6호의9 및 제6호의10을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의9. 제48조의6제3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자

6의10. 제48조의6제4항을 위반하여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 운반한 자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정보보호인증에 관한 적용례) 제48조의6제3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고위험기기등부터 적용한다.

제3조(고위험기기등의 판매 등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제조되었거나 수입된 고위험기기등에 대해서는 이 법 시행일부터 1년까지는 제48조의6제4항의 개정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른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시험 결과 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이 제2항에 따른 인증기준에 적합한 경우 정보보호인증을 할 수 있다.	제48조의6(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에 관한 인증) ① ----- -----제6항----- ----- ----- ----- -----.
② (생 략)	② (현행과 같음)
<신 설>	③ <u>정보통신망연결기기등 중 침해사고가 발생하는 경우 국가안전보장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재산에 피해를 줄 우려가 큰 것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기·설비·장비(이하 “고위험기기등”이라 한다)를 제조하거나 수입하는 자는 제1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아야 한다.</u>
<신 설>	④ <u>누구든지 제3항에 따른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한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보관 또는</u>

③ · ④ (생략)

⑤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은 제4항에 따라 지정된 인증시험 대행기관(이하 “인증시험대행기관”이라 한다)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생략)
2. 제4항에 따른 지정기준에 미달하게 된 경우

⑥ · ⑦ (생략)

제64조의4(청문)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또는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청문을 하여야 한다.

1. ~ 5. (생략)

5의2. 제48조의6제3항에 따라 정보보호인증을 취소하려는 경우

운반하여서는 아니 된다.

⑤ · ⑥ (현행 제3항 및 제4항과 같음)

⑦ -----

제6항-----

-----.

-----.

1. (현행과 같음)

2. 제6항-----

⑧ · ⑨ (현행 제6항 및 제7항과 같음)

제64조의4(청문) -----

-----.

1. ~ 5. (현행과 같음)

5의2. 제48조의6제5항-----

--

5의3. <u>제48조의6제5항에</u> 따라 인증시험대행기관의 지정을 취소하려는 경우 6. (생략)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 (생략)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와 제7호부터 제11 호까지의 경우에 해당하는 행 위를 하도록 한 자에게는 3천 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 다. 1. ~ 6의8. (생략) <u><신설></u> <u><신설></u> 7. ~ 12. (생략) ③ ~ ⑤ (생략)	5의3. <u>제48조의6제7항</u>----- ----- ----- 6. (현행과 같음) 법률 제21500호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 률 일부개정법률 제76조(과태료) ① (현행과 같음) ② ----- ----- ----- ----- ----- -. 1. ~ 6의8. (현행과 같음) 6의9. <u>제48조의6제3항을 위반하 여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니 한 자</u> 6의10. <u>제48조의6제4항을 위반 하여 정보보호인증을 받지 아 니한 고위험기기등을 판매하 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 보관 또는 운반한 자</u> 7. ~ 12. (현행과 같음) ③ ~ ⑤ (현행과 같음)
---	--